

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

의안 번호	166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. 2. 20.

제안자 : 서울특별시의회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

1. 주문

- 현행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24조제1항에 건축물철거·멸실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해체공사계획서에 ‘지상 5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, 지하 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해체공사계획에 따른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’를 추가할 것을 개정 건의함.
- 현행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[별표 2] 중 ‘비계·구조물 해체 공사업’ 등록기준에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할 것을 개정 건의함.

2. 제안이유

- 건축물 해체 공사는 신축공사와 마찬가지로 현장 안전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, 그 동안 석면 등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되어온 반면,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임.
- 따라서,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른 건축물철거·멸실신고서에 첨부하는 해체공사계획서에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를 추가하도록 하여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한편,
-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[별표 2]의 비계·구조물 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함으로써 해체공사 중에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, 「건설기술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나. 기타사항 : 없음

4. 이송처

- 가. 국회 : 안전행정위원회, 국토교통위원회
- 나. 정부 : 국민안전처, 국토교통부

5. 첨부 : 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건의안

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

- 지난 1월 13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건물 붕괴 사고는 철거작업 시 구조적 검토 및 조치/관리 소홀이 야기한 인재라 할 수 있습니다.
- 건축물 철거와 관련해 현행 「건축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체공사계획서,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, 안전관리계획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,
- 그 내용을 살펴보면,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또는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, 해체작업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방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철거공사과정에서 구조적인 안전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.
- 또한, 철거공사가 추락이나 붕괴 등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건축주 및 해체공사업자의 경우 신축공사와 달리 철거공사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성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
- 따라서, 해체공사 계획단계에서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구조전문가의 안전성 검토가 수반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, 철거공사과정에서도 철거공사업체의 등록기준에 전문 안전관리자를 추가토록 함으로서 철거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.
- 이에 서울시의회는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24조제1항 중 해체공사계획서에 지상 5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, 지하 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해체공사계획에 따른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를 추가하도록 할 것과,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[별표 2]의 비계·구조물 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포함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.

2017. 2. 20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

[붙임1] 관련 법령

관 련 법 령

「건축법 시행규칙」

제24조(건축물 철거·멸실의 신고)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·멸실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층별·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
2.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
3.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

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·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③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·멸실 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·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④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·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·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, 건축물의 철거·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·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.
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

[별표 2]

건설업의 등록기준(제13조 관련)

업종	기술능력	자본금 (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)	시 설 · 장 비 · 사 무 실
비계· 구조물 해체 공사업	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·건축·광업 분야(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)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	법인 및 개인	2억원 이상 사무실